



전면등교 대비,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안내

웃터골초 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22일부터 전면등교를 앞둔 가운데, 때 이른 한파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 저하, 자연환기 제한 등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감염병(독감, 감기 등)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**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**를 부탁드립니다. **발열 외 오한, 기침,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(기본원칙)**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(교육부 지침으로 유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 검사 및 진료 학생만 감염병 출석인정 처리 가능합니다. 이외 학생은 가정 체험학습 신청)

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

- 1) 등교 시 마스크(KF80 이상) 착용을 권장합니다.
- 2) 등교 전 '건강상태 자가진단'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3)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기바랍니다.
- 4)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(자가격리 대상)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.
- 5)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. (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)
- 6) PC방, 노래방 등 밀폐·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.

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<초등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가이드라인>

대상	등교 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 22호 서식]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<유의사항> [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] 참조 - 다만,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1)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(PCR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)격리 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** (임상증상 발현 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<유의사항> [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] 참조 - 다만, 주기적 선제검사(병원·항공 등 직업특성, 대회참여, 이동검체검사 등)의 경우 적용 제외 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 제출시 감염병 출석인정 결석) ※ 선별진료소 미방문후 가정내 관찰 학생의 경우 가정 체험학습(출석인정 결석)으로 관리하며 담임선생님께 당일 신청가능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(진료·방문)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(진단)서 -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+② 두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
	유증상 상태에서 등교 희망하는 경우	

2021년 11월 19일

웃터골초등학교장